

# 화재보험 요율의 적용방법

—보험계약자 이해를 중심으로—

〈지난호에서 계속〉

나. 보험사고

보험자는 우연한 특정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가입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이 사고를 보험사고 또는 위험(risk)이라고도 한다.

보험사고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라야 한다.

우연이라 함은 계약성립 당시에 그 발생 자체, 발생시기 또는 결과가 불확정 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불확정성은 객관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계약관계자에게 불확정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사고는 특정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보험사고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은 보험의 목적을 말한다.

다. 보통보험약관과 특별약관

보험계약은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개의 계약에 대하



윤동혁  
〈본협회 업무부 차장〉

여 일일이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은 번잡하기 짹이 없다. 따라서 미리 표준적 계약조항을 정하여 두고 이것으로써 각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표준적 계약조항이 바로 보통보험약관이다.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은 주로 화재위험(사고)만을 담보하고 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재보험은 화재 이외에 풍수재위험까지도 담보하고 있다.

특별약관은 화재 이외의 사고를 담보하는 약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화재보험기초서류에 소개되어 있으며 차후 상술하기로

한다.

라. 계약전 알릴의무와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실을 알릴 것과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불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것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을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한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와 불실하다는 것을 알고서 알리는 경우이다. 중과실이라 함은 사실에 관한 것을 알리지 않거나 또는 불실하게 알리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몰랐을 경우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알리지 아니할 경우에도 중과실로 인하여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 하여야 한다.

계약후 알릴의무에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1)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알릴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것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사고발생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 보험자가 부담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이행지체로 되지 아니하고 또 통지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보험자가 손해를 받은 때에는 통지의무자는 이것을 배상하여야 한다.

#### 마.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목적, 곧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말한다.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경제적인 이익이므로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치가 보험가액이다. 그러므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피보험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최고 한도임과 동시에 보험자의 급여금액의 최고 한도이다. 보험가액의 평가는 피보험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 없고 일반적 객관적인 처지에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상품등의 처분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액을 공제한 것을 보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의 목적이 취득 후 수년을 경과한 점포등으로서 손해발생 후에도 그 사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것만으로는 점포를 개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조달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를 신가보험이라 한다. 특히 공장물건에 있어서 기계인 경우에는 경과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경과기간이 같고 성능이 같은 동종의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는 손해발생후 그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 기계의 구입으로 인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게된다. 그러므로 신가보험을 잘 이용하여 손해발생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손해발생시에 그 보상의 방법으로서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당사자가 협정하는 경우나 협정하지 않는 경우에 서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일이 있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초과보험·일부보험·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긴다.

#### (1)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한다. 현행 상법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만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에게 사기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초과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보험계약자

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한다. 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체결 후 물가의 등 귀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보험에서 손해가 보험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부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예컨데 1천만원의 건물에 대하여 7백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5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부담은

$$7,000,000 \times \frac{5,000,000}{10,000,000}$$

$$= 3,500,000$$

즉 350만원이다. 이것을 비례보상의 원칙이라 한다.

#### (3)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고, 피보험이익 및 보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보험가입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 한다.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시차에 불문하고 각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책임을 지고 또 자기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